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8. 18 선고 2022가단2484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

담당변호사 추연식

피 고 1. B 주식회사

2.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섭

변 론 종 결 2023. 6. 23.

판 결 선 고 2023. 8. 18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소외 D과 소외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1. 9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소외 D과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3. 17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7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2. 원고에게, 피고 B 주식회사는 30,000,000원, 주식회사 C는 7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소외 D에게 2009. 10. 22. 30,000,000원, 2017. 5. 26. 30,000,000원, 2017. 5. 30. 20,000,000원, 2019. 4. 2. 30,000,000원 각 대여하여 합계 110,000,000원을 대여하였고, D으로부터 2019. 9. 23. 10,000,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대여금 잔액 100,000,000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100,000,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21. 6. 22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(2021카단529, 위 가압류를 이하 ‘이 사건 가압류’라 한다)을 받았다. 원고는 이에 기하여 같은 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로하였고, 그 후 D에 대한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22. 9. 21.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(2022가단 76262 판결).

나. D은 2020. 11. 1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1. 9. 채권최고액 423,600,000원, 채무자 D,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E(이하 ‘E’이라 한다)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하였고, 이후 2021. 9. 27.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, 2021. 9. 27.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및 2021. 9. 27.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액 423,600,000원, 채권자를 피고 B 주식회사(이하 ‘피고 B’이라 한다)로 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이 설정되었다.

다. 또한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3. 17. 채권최고액 150,000,000원, 채무자 D, 근저당권자 소외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하였고, 이후 2021. 11. 4.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21. 11. 3.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주식회사

C(이하 ‘피고 C’라 한다)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라. 한편 소외 H이 2021. 5. 6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(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)가 개시되었고, 위 법원은 2022. 4. 27.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576,829,624원 중 피고 B에게 380,000,000원, 피고 C에게 150,000,000원, 원고에게 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,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들은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, 을가 제1 내지 5호증, 을나 제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및 F와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E, F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금액 상당액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들의 주장

원고의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소 제기로서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1)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, 이때 채권자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(민법 제406조).

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‘취소원인을 안 날’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

된 날을 의미하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,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,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.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면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(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2021. 6. 22.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할 무렵에는 취소원인을 알았음에도,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. 6. 24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호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

① 원고가 2021. 6. 22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E의 근저당권 및 F의 근저당권을 ‘이 사건 각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가 경료되어 있었고, 당시 제출한 원고의 가압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,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시점에 채무자 D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그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

② 원고의 채권은 2009년 30,000,000원, 2017년 30,000,000원 및 20,000,000원, 2019년 30,000,000원 합계 110,000,000원의 대여금이고, D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2019년 10,000,000원에 불과한바, 채권이 오래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그 동안 변제받은 금액은 극히 일부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D의 재산상태나 변제능력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.

③ E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, 2010년 및 2019년 주식회사 J의 각

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9년 K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.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을 원고로서는 D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,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D의 유일한 부동산인 점을 고려할 때,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시점에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.

④ 원고는 2021. 5. 6. 또다른 채권자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을 신청하였으나, 2022. 4. 27.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로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들인 피고들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, 그로부터도 2개월여가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⑤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원고가 D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, 일반인으로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정확한 부족액을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, D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과 수익자인 근저당권자들의 사해의사 역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

판사 양철한

[별 지]

1동 건물의 표시

경기 안산시 삼록구
철근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24층 공동주택

전유부분의 표시

제2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00.189㎡

대지권의 표시

경기 안산시 삼록구 대 89837.5㎡
소유권대지권 89837.5㎡ 62.9628

